

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6월 5일, 심현정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년 6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6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심현정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고 징계 등에도 의정비가 지급되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됨.

나. 주요내용

- 의정비 지급 제한(안 제3조의2)
 -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, 징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제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6. 10.)

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심현정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6. 5.
- 회부일자 : 2024. 6. 10.
-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2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고 징계 등에도 의정비가 지급되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됨.

3. 주요내용

- 의정비 지급 제한(안 제3조의2)
 -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, 징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제한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의 ‘지급기준’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’을 의결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군의회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한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군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의2(지급제한) 및 별표3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기준을 (기존) 구금에서 (개정) 징계 및 구금으로 강화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하도록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비위행위로 인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으로,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문의 맞춤법 등도 같이 정비하여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.

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

의안번호 제2022 - 859호

의 안 명 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

대상기관 행정안전부, 243개 지방의회

의 결 일 2022. 12. 19.

주 문

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243개 지방 의회의 장에게 권고한다.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IV. 개선방안

1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

□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

- 겸직·영리행위 금지 위반을 포함하여 갑질·성 비위,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'출석정지 90일 이내'로 확대

□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새로운 징계수단 도입

- 지방의원직에서 원천 배제되는 처분인 제명과 공식 회의 출석이 금지되는 30일 이내 출석정지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 해소
※ '○개월 이내의 직무정지', '출석정지 일수 확대' 등 다양한 방안 검토

2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

□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

- 본회의·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·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

구분	의정비 지급 제한(예시)
출석정지 ▶ 일반적인 경우	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/2 감액 (⇨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
▶ 질서유지 의무 위반	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(⇨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
공개회의 경고·사과 ▶ 질서유지 의무 위반	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/2 감액 (⇨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

< 예시: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>

현 행	개선안(예시)
<p>제○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)</p> <p>< 신설: 출석정지 ></p> <p>< 신설: 공개회의 경고·사과 ></p>	<p>제○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.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<p>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</p>

3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

□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

-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공소제기 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또는 지자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 감액

※ (예시) 의정비(월정수당+의정활동비) 전액 미지급, 월정수당 ○% 이내 지급 등

[붙임 2]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현 정 의원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6월 5일

대표발의자: 심현정 의원

발 의 자: 김성기, 이은미, 이창열,
김광성, 남진삼, 박춘희 의원

1. 제안이유

지방의회 의원이 갑질, 성 비위,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를 받더라도 재직 중에는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어, 제재기준 강화와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규정 구체화(안 제3조의 2 [별표 3])

※ 기존 제2조의2를 제3조의2로 하고, 별표 3을 신설

나. 띄어쓰기 수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: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평창군 회의 규칙」 제22조
제2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 제외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의2를 제3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2조의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의2(지급제한) 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,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별표 3에 따라 제한하여 지급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의정활동비 :”를 “의정활동비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월정수당 :”을 “월정수당: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”로 한다.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(제3조의2 관련)

종류	제한 사항	
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	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2분의 1 감액 지급	
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	출석정지 기간에 한하여 2분의 1 감액 지급	
	<p>다만, 출석정지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.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	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간 전액 지급 제한
공소제기 후 구금상태	전액 지급 제한	

비고

1.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
2.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련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거나, 공소제기 된 소송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지급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3조의2(지급제한) 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,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별표 3에 따라 제한하여 지급한다.</p>
<p>제3조(지급기준)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(이하 “의정활동비 등”이라 한다)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의정활동비</u> : 별표 1</p> <p>2. <u>월정수당</u> : 별표 2</p> <p>② 여비 지급기준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별표 6(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)에 의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적용한다.</p>	<p>제3조(지급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의정활동비</u>: ----- 2. <u>월정수당</u>: -----</p> <p>② 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[관계 법령]

<지방자치법>

제100조(징계의 종류와 의결)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공개회의에서의 경고
2.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3.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4. 제명

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1